
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

2023. 2. .

국 토 교 통 부

건축문화경관과

1. 개정이유

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,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*되고 있는 추세임

*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('20.1)

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,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,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'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'을 고시·운영 중('14.6~)으로, 그간 국회, 조달청, 지자체, LH 등으로부터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공모절차의 투명성·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(안 제5조 및 제12조)

나.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(안 제12조 및 제13조)

* 실시간 공개, 심사총량제, 위원장 호선 및 제척기준 정비 등

다.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(안 제2조 및 제41조)

라. 그 외 자구수정

* 제출도서 기준 완화, 입상작의 보상 및 취소 기준 정비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설계공모“라 함은 「건축기본법」 제3조제4호의 ‘건축디자인’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(디자인 공모)로써,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건축설계의 선정을 위해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이 설계자(공동참여를 포함한다)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·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”을 “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본문 중 “위촉한”을 “위원장 1인을 포함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

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설계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발주기관등은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,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.

제12조제8항(중전의 제6항)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그 밖에 위원과 심사 대상 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2조제9항(중전의 제7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

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공개”를 “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당선작 선정”을 “입상작 선정”으로, “당선작을”을 “입상작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발주기관등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수”를 “수 있으며, 동 순위 발생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계약상대자”를 “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
1. “설계공모“라 함은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“이라 한다)이 설계자(공동참여를 포함한다)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·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.	1. “설계공모“라 함은 「건축기본법」 제3조제4호의 ‘건축디자인’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(디자인 공모)로써,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건축설계의 선정을 위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~ 14. (생략)	2. ~ 1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)	제5조(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)
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① ----- ----- ----- --. 다만,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

가. ~ 하. (생략) ② (생략) 제9조(공모안의 제출) ① ~ ⑤ (생략) ⑥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<u>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</u> 제11조(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(생략)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<u>위촉한 5~9인의 심사위원</u>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·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 ③·④ (생략) <u><신설></u>	<u>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9조(공모안의 제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「<u>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</u>」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-----. 제11조(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 <u>위원장 1인을 포함한</u> 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여야 한다.</u>
---	--

<신 설>

⑤ 발주기관등은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

⑦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
이 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
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
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
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
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
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
을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⑨ -----

----- . 다만, 제2항 단
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
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
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
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

⑧ ~ ⑪ (생략)

제13조(심사위원회 개최) ① ~

③ (생략)

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해야 하며,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.

⑤ ~ ⑧ (생략)

제15조(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)

① ~ ③ (생략)

④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·향응 등의 제공·수수, 담합, 알선·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제19조(제출도서 등) ① (생략)

② 조감도,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,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공모

야 한다.

⑩ ~ ⑬ (현행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)

제13조(심사위원회 개최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-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입상작 선정 -----

----- 입상작을 -----
----- 이 경우 발주기관등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
하여야 한다.

제19조(제출도서 등) ① (현행과

같음)

②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
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. 다만,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,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,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(공모비용의 보상) ①·② (생략)

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%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가. ~ 라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4조(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)

제21조(공모비용의 보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수
있으며, 동 순위 발생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---.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)

①・② (생략)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, 또는 이 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에는 제5조제1항의 공모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. 제41조(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)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 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 를 <u>계약상대자</u>로 결정한다. ② ~ ⑤ (생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41조(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) ① ----- ----- -- <u>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의 계약상대자</u>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